

#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0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  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김규남,  
김기덕, 김원중, 김원태,  
남창진, 문성호, 윤종복,  
이성배, 이원형, 이종배,  
이효원 의원(13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서울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와 시 산하기관의 각종 브랜드를 관리·조정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(서울브랜드총괄관) 위촉과 업무범위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- 나. 민간전문가의 역할,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6조의2를 제7조의2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)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(이하 “서울브랜드총괄관”이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1. 대학에서 광고·마케팅·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2. 광고·마케팅·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·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

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
2.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
3.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(입찰, 현상 공모, 용역 수행 등)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)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(이하 “서울브랜드총괄관”이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학에서 광고·마케팅·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</li> <li>2. 광고·마케팅·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3.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</li> </ol>

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

· 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

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  
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
연임할 수 있다.

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  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  
방안에 대한 자문

2.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  
립에 대한 자문

3.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 
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
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 
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 
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 
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  
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 
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개인  
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  
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  
의 업무(입찰, 현상 공모, 용역 수

제6조 ~ 제9조 (생략)

행 등)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 ~ 제10조 (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문서번호

2023020100000014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이종환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류동균 주무관

접수일 : 2023.02.06.

회신일 : 2023.02.0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하고, 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역할,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○ 추계의 전제

- 안 제6조 제2항 제 2호 자격요건 ‘광고·마케팅·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’ 를 참고하여 인건비는 1급 연봉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
- 6조 제7항에 따라 적정 횟수의 자문 수당 산정
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나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270,140천원(연평균 54,028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 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(안 제6조 제4항 등)	54,028	54,028	54,028	54,028	54,028	54,028	270,140
	소계(b)	54,028	54,028	54,028	54,028	54,028	54,028	270,140
총비용(b-a)		54,028	54,028	54,028	54,028	54,028	54,028	270,140

- 서울브랜드총괄관 총 운영비 ≙ 270,140천원

- 산출방식 : 연간(2024~2028) 비용의 합산 : 54,028천원(44,428천원 + 9,600천원) × 5년
- 연간 브랜드총괄관 인건비 = 1급 공무원 시간당 최대연봉액 × 주2일 전일 근무가정 시 연 근무시간  
= 57,849원 × 8시간 × 2일 × 4주 × 12개월 = 44,428천원
- 연간 브랜드총괄관 수당 = 월 자문횟수 × 수당 × 12월 = 4회 × 200천원 × 12월  
= 9,600천원



- ※ 연봉은 1급 공무원 연봉 상한액인 122,177천원(2023 지방공무원 업무 등 보수지침 p141)으로 산정.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평균 권고 시간(실제 근무시간과 다름)인 176시간으로 산정하여 도출한 2,112시간으로 나눈 57,849원(소수 5자리 이하 절사)을 시급으로 산정
- ※ 서울브랜드총괄관을 운영 예정인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담당자의 견해에따라 비상임 위촉직인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을 참고하되,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36조 총괄건축가는 산하조직관련 조항을 염두에 둔 점 등 건축관련 업무에 비해 도시전체 브랜드관련 자문업무량이 적다는 담당부서 의견을 참고하여 총괄건축가의 주4회 근무의 절반 수준인 주 2회 근무 가정(8시간\*2일\*4주\*12개월)하여 산정
- ※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「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하고 월 4회 자문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
- ※ 기타 서울시 브랜드를 총괄차원에서 학술세미나, 공무국외여행 관련 비용은 서울총괄건축가와 동일하다고 가정

[참고] 2023년도 서울총괄건축가 사업비 내역(도시공간기획담당관): 총 128,470천원

사업명	사업명	예산액
· 서울총괄건축가 운영	○ 총괄건축가 수당	64,108원*8시간*4일*4주*12개월
	○ 학술세미나, 워크샵 등 개최	5,000,000원*2회
	○ 민간인국외여비	10,000,000원*2회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류동균

☎ 02-2180-7952

e-mail : rooster72@seoul.go.kr